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근거 마련 〉

■ 강승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224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승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18.

(3) 회 부 일 : 2025.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인 사항이 기록되거나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등록부의 정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된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기재된 사례에서와 같은 경우 비록 정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의 재작성은 되지 않아 당사자로서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례에서와 같이 잘못된 기록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그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예외적인 재작성 가능성을 간략히 언급하고는 있으나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그 요건에도 문제가 있어 위 사례 등에 대한 대응에는 부족함).

이에 직계인척관계인 당사자간에 혼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잘못된 기록의 피해자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인 기록이 「민법」 제815조제3호1)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사건 본인이 그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안 제10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신설>	제5장 등록부의 정정 및 재작성 제108조의2(등록부의 재작성) ① 제104조제1항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정정의 대상인 기록(제18조, 제104조 또는 제105조에 따라 이미 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민법」 제815조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사건 본인은 그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인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재

현행	개정안
	작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재작성되는 등록부에는 제104조제1항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정정의 대상인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누락된 사항은 처음부터 누락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기록한다. ④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부의 재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기존의 등록부에 폐쇄의 표시를 한 후 폐쇄등록부로서 관리한다. 이 경우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등록부에 대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⑤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9조, 제41조, 제42조는 등록부의 재작성신청에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의 재작성 및 기존 등록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부 정정제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무효의 것)이거나 또는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이

1)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의미하는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절차로 시·읍·면의 장에 의한 직권 정정절차(제18조)와 이해관계인등의 신청에 따른 정정절차(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사유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무효의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제18조, 제104조),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제105조), 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경우(제107조) 등이 해당함.

[가족관계등록법상 등록부 정정 관련 규정]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

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사유가 있어 기록사항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표시사항은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내용과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²⁾과 일반등록사항란³⁾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 자체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사항 전체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소내용과 사유를 각 해당 사항란에 기록함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일반등록사항”이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법과 이 규칙에 따라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6조(등록부의 정정방법) ①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 자체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사항 전체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소내용과 사유를 각 해당 사항란에 기록한다.

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가족관계 등록부재작성예규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제도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등록부 폐쇄 또는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예규(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예규”라 함)에서 재작성의 사유, 재작성 신청 및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동 예규에 따르면 혼인 대상을 잘못 기재한 경우(갑남이 을녀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인 병녀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한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하였으나 그 기록내용이 후에 올바르게 정정된 경우) 등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예규제2조제2호가목)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작성 승인신청에 따라 법원이 승인을 한 경우에는 정정이 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과 그 정정에 관한 기록은 이기(移記)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기록사항은 모두 그대로 이기하는 형태로 등록부를 재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예규 제5조 및 제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관련 규정]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①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가 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제20조(멸실고시)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산운영책임관의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손상보고가 있는 때에 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와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와 등록전산정보부분자료의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필요한 승인과 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에규로 정한다.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작성의 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민법」 제815조제1호, 제883조제1호)으로 하는 혼인(입양)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2.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하였으나 그 기록내용이 후에 올바르게 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등록부
 - 가. 갑남이 을녀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인 병녀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
 - 나. 갑·을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병·정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

다. 갑에 대한 사망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생존자인 을에 대하여 사망기록을 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

3. 등록부정정이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로서 위 1호,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이 그 정정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4.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 자료구축과 관련, 구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호적기재사항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기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이 이루어졌거나 시(구)·읍·면의 장에 의한 직권정정이 완료된 후 이해관계인의 재작성신청 또는 직권재작성의 필요가 있는 때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한 때
6. 가족관계등록부등록사항별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하여 호적부 전산화 이전에 분가한 후, 분가 전 호적이 전적 등의 사유로 새로이 편제된 경우와 같이 전산호적부상의 가족이 아니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이 이루어졌거나 시(구)·읍·면의 장에 의한 직권정정이 완료된 후 이해관계인의 재작성신청 또는 직권재작성의 필요가 있는 때

제3조(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중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는 재작성신청인과 신청연월일 및 그 사유, 재작성신청인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서에는 혼인(입양)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그 혼인(입양)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도 그 등록부정정이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방법) ①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이기범위는 제2조 중 제5호를 제외하고는 정정이 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과 그 정정에 관한 기록은 이를 이기하지 아니하되, 나머지 기록사항은 모두 그대로 이기한다.

- ②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완료한 후, 기록되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것을 발견한 경우에 폐쇄등록부 등의 재작성자료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하고, 위 재작성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사건본인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재작성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직권에 의한 재작성을 포함한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폐쇄의 표시를 한 후 폐쇄등록부로서 관리한다.
- ⑤ 등록사항별증명서의재작성기재례는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참조

라. 검토의견

개정안은 제104조제1항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인 기록이 「민법」 제815조제3호⁵⁾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사건 본인은 그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8조의2제1항), 재작성되는 등록부에는 정정의 대상인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하며(안 제108조의2제3항), 기존 등록부는 폐쇄하도록 하는(안 제108조의2제4항) 등의 내용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제도에도 불구하고 정정내용과 사항이 가족관계등

5)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록부에 남아 이해관계인에게 사회적으로 부당한 오해가 발생하는 등 법률로 정한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104조제1항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정정의 대상인 기록이 「민법」 제815조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사건 본인이 그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재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유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예규에 따른 경우에도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행 대법원예규에도 불구하고 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재작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과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예규에서는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재작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 개정안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조문 구성에 있어 일부 규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유로 “제104조제1항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정정의 대상인 기록이 「민법」 제815조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예규 제2조 등을 고려하여 관련 사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예규 제2조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유로 i) 당사자 사이에 혼인(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입양)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ii) 혼인신고 등에 있어 대상을 잘못 기재하는 등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하였으나 그 기록내용이 후에 올바르게 정정된 경우 등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 iii)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하게 부당하고 인정하는 때, iv) 가족관계등록부의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한 때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유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이 가능한 중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581호, 김재섭의원 대표발의)⁶⁾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신청 사유를 i) 신고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계인척이 배우자로 기록된 경우, ii)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고된 경우, iii) 그 밖에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581호,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8조의2(재작성의 신청) 제18조, 제104조 또는 제105조에 따라 정정하여야 하거나 이미 정정된 기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사건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시·읍·면의 장에게 등록부의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계인척이 배우자로 기록된 경우 2.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고된 경우 3. 그 밖에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논의시 관련 사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8